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9 선고 2022가단52700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

담당변호사 양지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5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11,553,065원 및 그 중 10,193,307원에 대하여 2022. 7. 19.부터 2022. 9. 2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22. 12. 9.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1,553,065원 및 그 중 10,193,307원에 대하여 2022. 7. 19.부터 2022. 9. 2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2022. 12. 9.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5. 11. 체결된 증 여계약을 11,553,065원 및 그 중 10,193,307원에 대하여 2022. 7. 19.부터 2022. 9. 20.까지는 연9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1,553,065원 및 그 중 10,193,307원에 대하여 2022. 7. 19.부터 2022. 9. 2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무변론 판결 선고 대상 사건이므로, 청구취 지 기 재 각 ‘변론종결일’을 ‘판결 선고일’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정권

별지